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
일부 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24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6. 5. 15.
제안자 : 윤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지방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현재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나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2006. 4. 28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급기준을 회기수당에서 의정활동비로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 상당한 금액을 지급(안 제4조의1)
- 나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(안 제4조의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
 -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- 나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

일부 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: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회기수당”을 “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시·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”을 “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<u>지방자치법</u>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 1 조 (목적) ----- 「<u>지방자치법</u>」 -----</p>
<p>제 2 조 (정의)(생략)</p> <p>1.(생략)</p> <p>2. "회기수당"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을 말한다.</p>	<p>제 2 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"<u>의정활동비</u>"라----- 의정활동비를-----.</p>
<p>3.(생략)</p>	<p>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 4 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(생략)</p> <p>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·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2.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·도의원 당해연도 회기수당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</p> <p>3.(생략)</p>	<p>제 4 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----- -----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-----</p> <p>2.-----서울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-----</p> <p>3.(현행과 같음)</p>